

[서식 예] 자동차등 불법사용죄

고 소 장

고소인 0 0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번지

주민등록번호 : 111111 - 1111111

전화번호: 000 - 0000

피고소인 △ △ △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번지

주민등록번호: 111111 - 1111111

전화번호: 000 - 0000

고소취지

피고소인은 고소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였으므로 자세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 소 사 실

1. 고소인은 ○○ 라 ○○○○번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입니다. 고소인은 20○○. ○. ○일 차량 엔진에 이상이 있어 평소 이용하던 ○○○카센타에 수리를 부탁하였습니다. 카센타 주인은 이틀 후면 차량을 말끔히 수리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약속한 날 차량을 찾으려고 카센타에 갔으나 카센타 주인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정비소에 보냈다고 하였습니다. 차량을 운행한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리 없어 해당 정비소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카센타 주인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



- 2. 카센타 주인에게 자동차의 소재를 추궁해보니 동생인 피고소인이 놀러왔다가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차량을 끌고 나갔다는 것입니다. 카센타 주인이 말하기를 "평소 피고소인이 종종 형 몰래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다."라고 하며 곧 가지고 올테니 걱정하지 말라하였습니다. 카센타 주인 말대로 그 날 차량반환이 되었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틀이 지나도록 차량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.
- 3. 비록 피고소인은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여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진술서

1통

20 ㅇ ㅇ 년 ㅇ 일 ㅇ 일

위 고소인 ○ ○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람표)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※ 아래(2) 참조(형법 344조, 328조)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331조의 2
범죄성립 요 건	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, 선박,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때		
형 량	· 3년 이하의 징역(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: 형법 345조) ·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, 과료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 복 절 차 및 기 간	·기산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(허번소원)		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

※ (2)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

- 1.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
- 2.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
- 3.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